1-2 무역거래의 절차

1. 수출절차

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

1)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한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한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처에게 자기회사와 취급상품 등 영업정보를 안내하여 거래관계를 맺고 싶다는 안내장을 말한다.

잠재적 거래처가 권유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면 수출자에게 조회(inquiry)를 한다. 조회는 거래조건에 대한 조회(trade inquiry)와 신용조회(credit inquiry)로 구분된다. 여기서 신용조회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수입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시에는 3C's 를 보는데, 성실성 및 평판(Character), 재무상태(Capital), 영업능력(Capacity)을 말한다.

조회가 끝나고 수출자가 청약(offer)하고, 수입자가 이를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은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승낙은 청약 내용을 무조건 •무수정으로 수락한다는 피청약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 물품매매계약이 성립되어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만, 계약 내용을 확실히하고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수출자는 수출계약서(export contract sheet)나 매매계약서(sales note)를 작성해 수입업자에게 송부하고 확인을 받을 수있고, 수입자는 주문서(order sheet)나 매약서(purchase note)를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요한 조건들을 빠짐없이 약정하고, 기타통상적인 거래조건들은 일반거래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역거래의 주체와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제도

과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의 주체는 "무역업자"과 "무역대리업자"로 구분되었다.

무역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책임과 위험 하에 수출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통상 제조업자, 종합무역상사가 포함된다. 무역업자는 수출입 능력이 없는 기업을 상대로 수출입대행계약에 의거 약정 수수료를 받고 자기 명의로 수출입을 수행하기도 한다. 무역대리업자는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 물품의 구매 또는 외국 물품의 판매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와 같이 외국 수입자의 국내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수출물품구매업자"라고 하고, 후자와 같이 외국 수출자의 국내 물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자는 대외무역법상 신고제가 적용되어 이를 신고한 자만이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 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의 주체를 "무역거래자"로 통칭하면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신고제를 폐지하였다(제 2 조제 3 항).

무역거래자가 무역거래를 하려면,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수출입신고시 이를 기재해야 한다.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제도의 목적은 무역거래자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와 관세법에 따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금융 및 세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이다.

2) 신용장의 도래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수입자는 계약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신용장 발행(개설)을 요청한다. 신용장 발행(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한다. 신용장을 통지받고 이를 수취한 수출자는 계약조건에 맞는 유효한 신용장인가를 점검하고 만일 계약내용과 신용장조건이 상이하다면 즉시 신용장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받고 나면 대금결제 위험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므로 수출자는 안심하고 수출물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그밖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수출승인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품목이 대외무역법상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종전 대외무역법 하에서 무역거래자가 무역거래를 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수출입 거래별로 산업자원부장관(현재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1997 년 개정 후에는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를 참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만 수출입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변경되었고, 승인권자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되었다. 즉 현행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자동으로 수출입이 허용되는 "Negative List System"이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Export Restricted Items)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출자동승인품목(Export Automatic Approval Items : A.A.)이 되므로 별도의 수출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수출제한품목에 해당되면 해당 수출승인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여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 ; E/L)를 취득하면 된다.

수출승인의 기본 유효기간은 1 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 년 이내로 단축이 필요하거나, 물품의 제조 • 가공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 년 이내의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수출승인을 받은 이후 수량, 가격(단가 포함), 유효기간, 당사자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수출승인한 기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출승인 유효기간과 그 변경승인 요건은 수입승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우리나라 수출입공고상 상품분류체계

우리나라는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과 범세계적인 전산화를 위하여 "HS(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품을 21 개의 부(Section), 97 개의 류(Chapter), 5133 개의 품목(Heading)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 방식의 6 단위 분류에다가 국내 제반사정을 감안한 자체 4 단위를 합하여

우리나라는 HS 방식의 6 단위 분류에나가 국내 세만사성을 삼안한 사체 4 단위을 압하여 10 단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방식"이라 한다.

4) 수출품 확보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조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원자재의 조달은 국외에서 수입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수입을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이라 하여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① 수출입공고상 제한규정의 적용배제(수량제한의 적용배제) ② 관세환급 ③ 무역금융에 의한 수입자금의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조달에 대하여 우대를 하는 대신 수입량에 대한 적합한 산정을 위하여 과거에는 외화획득에 필요한 실제수량과 평균소모량을 포함시킨 수량을 소요량으로 하여 수입승인을 하여 왔으나, 2001 년 3 월부터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요량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자율소요량계산서"로 대체함으로써 자율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한편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즉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 만달러 이상인 업체, 수출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업체, 중견수출기업이나 과거 2 년간 미화 5 천달러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는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되어 일정기간 단위로 사후감독만 하고 있다. 또한 외화획득의 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교역상대국의 전쟁, 천재지변, 제도변경 등)가 발생하여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도변경신청을 통해 내수용으로 전용가능하다.

둘째,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수출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무역금융에 의한 내국신용장(local L/C)의 발행을 신청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역금융이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수출자에게 완제품 또는 원자재조달비용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을 말한다. 무역금융의 수혜기준에는 수출신용장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과거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무역금융은 ①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생산자금 ②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수입자금 ③ 국산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구매자금 ④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포괄금융 등으로 구분된다.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자가 받은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거래은행이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원자재 공급업자는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수출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 자기의 거래은행에서 환어음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하면 그 서류가 내국신용장 발행은행에 의하여 재매입(renegotiation)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화회득용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지만,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거나(송금방식수출인 경우), 무역금융 한도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한다. 즉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셋째,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수출자는 완제품 구입자금도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무역금융을 이용하거나, 완제품 공급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완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

※수출실적

수출실적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명시된 수출통관액, 가득액, 입금액, 확인액, 결제액 등을 말하며, 무역금융 융자금액의 산정 및 '무역의 날' 포상기준과 해외지사설치인가기준 등에 사용된다.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통관액(FOB가격)이지만, 수출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입금액, 가득액, 확인액, 결제액 등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첫째,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둘째, 외국인도수출이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위해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이 현지에서 매각된 경우, 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무체물(소프트웨어)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급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으로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각할 때 또는 행해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할 때주로 이용된다.

셋째, 원양어로수출에서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원양어선의 어획물을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입금되지만, 현지에서 사용된 어로경비는 대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러한 공제금액까지 수출실적에 포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넷째,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국내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다섯째, 외화획득용 원료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무역업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무역어음제도

수출업체가 인수기관(은행)과의 일정한 약정에 의해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무역어음(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중개기관(할인기관)에 할인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개기관은 무역어음을 일반투자가에게 매각하며, 인수기간은 무역업체의 매입(nego)대금으로 어음결제대금을 회수한다. 무역어음은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라, 취급기관의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인수된다.

5) 해상운송계약과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수출품의 확보되고 포장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수입지로의 운송을 위하여 해상운송계약(CFR 또는 CIF 조건인 경우)을 체결해야 한다. 컨테이너화물인 경우에는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료와 같은 대량산화물인 경우에는 부정기선에 의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CIF 조건인 경우 수출자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적 후, 수입자의 운송위험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청약서(Marine Insurance Application)를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승낙을 받으면 된다.

적하보험 부보시에는 계약에 약정한 보험조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조건으로 부보해야 하며, 계약에 약정된 보험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인코텀즈의 규정에 따른다.

6) 수출물품의 장치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절차(export customs clearance formality)란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수출물품을 장치하고 세관에 수출신고(Export Declaration)를 한 후,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과거에는 물품을 보세구역(bonded area)에 반입한 후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신속한수출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장치의무제가 1994 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출자는 제조공장이나 자신의 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신고를 할수 있다.

※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물품의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장치 • 가공 • 제조 •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대별된다.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세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시설이 좋지 않고 보관료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보세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민간이 설치 및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지정보세구역과 달리 세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보세운송이 필요하며 통관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만, 시설이 좋고 보관료가 싸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첫째,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구역으로, 이것은 원활한 거래와 중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둘째, 보세공장은 가공무역을 위해 외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셋째,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장치 •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이다.

넷째,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발전소, 제철소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등을 보세상태로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섯째,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절차로서 외국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다.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신고를 한 다음, 필요한 경우 세관검사(수출품의 경우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원칙임)를 받고, 관세법상 적법한 물품인 경우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ssion)을 교부받게 된다.

한편 수출신고는 물품제조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조완료 5 일전부터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이행한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와 달리 관세사를 채용하지 않고서도 가능하며, 이를 "자가통관"이라고 한다.

8) 선 적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본선의 선측까지 운반되어 본선에 적재하게 될 때, 이를 선적(shipment)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송하인이 직접 본선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회사가 지정한 인도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의해 고용된 하역업자에 의해 선적된다. 반면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송하인이 직접 하역업자를 수배하여 화물을 선적한다. 통상적인 선적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선하증권의 입수

송하인이 지정된 부두까지 화물을 운송하면 선사가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S/O)를 발급한다. 송하인이 선적지시서를 일등항해사에게 제출하면 선적이 개시된다. 이때 선박회사에 의해 지명된 검수인(tally man)은 인수된 화물의 검수 •검량을 실시하고 검수표(tally sheet)를 발급한다.

선적이 종결되면 일등항해사는 선적지시서와 검수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s : M/R)을 발급한다. 선사는 본선수취증의 비고란에 화물 하자의 기재가 없으면 무사고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을, 반대로 하자내용의 기재가 있으면 사고부선하증권(Foul Bill of Lading)을 발급한다. 후자의 경우 신용장에서는 무사고선하증권을 요구하므로, 만약 사고부선하증권을 환어음의 매입시 제출하면 수리거절된다. 이 때 송하인은

선사에게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제출하고, 다시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 파손화물보상장은 후일 비고란에 기재된 화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이다.

한편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했다는 수령증,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운송계약서, 목적항에서 선하증권의 소지인 또는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이므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2) 수출자의 선적통지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수입자에게 선적항, 선적일자, 선박명, 도착예정일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선적통지(Shipping Advice)라 한다. 선적통지는 계약에 약정된 통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면 된다.

9) 수출대금의 회수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이를 테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적하보험증권(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2 통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거래외국환은행은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조건에 일치될 경우에는 매입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환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조건대로 발행은행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 선적서류와 상업송장

선적서류란 선적화물의 재산권을 상징하는 일련의 서류로서, 이는 대금결제시 환어음의 담보가 되며, 계약상품을 인도하는데 이용된다. 선적서류는 다시 주요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된다. 전자는 매수인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송서류인 선하증권, 보험서류인 적하보험증권, 매매서류인 상업송장이 포함된다. 후자는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여기에는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주요서류 중에서 상업송장은 선적된 물품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계산서 겸 청구서의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출자가 매매계약 성립전에 거래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가상적으로 발행하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한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입물품가격을 높게 책정해 외화를 도피하거나 반대로 낮게 책정하여 수입관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발행하는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등과 구별된다.

10) 관세환급

수출대금을 회수한 수출자는 선적확인필 수출신고필증을 입수하여 관세환급을 받는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이행 후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원재료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가 가격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부담을 면제하여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자재가 사용된 물품(완제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하며(신청요건), 원자재를 수입한 날(수입통관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수출해야(이행요건)한다.

11) 사후관리와 클레임의 해결

수출입 모두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을 얻은 수출입업자가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이내(기본유효기간 1 년)에 당해 물품을 수출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승인 유효기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하여 승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제품의 대응수출을 통하여 외화획득이 되었음을 신고함으로써 사후관리업무를 종결하게 된다.

사후관리를 끝으로 수출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물품을 수령한 수입자는 도착된 물품이 계약상 물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출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각종 구제조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클레임(claim)이다. 매매계약당사자간 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화해, 상사중재, 소송 등이 있으나, 이 중 최선의 방법은 화해(amicable settlement)이다. 그러나 화해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소송보다는 상사중재가 유리하다.

2.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취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수입통관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의 경우도 수출과 같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무역관계법규에서 규제하는 바에 따라 수입절차가 이루어진다.

수입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나 그 밖의 원료 등의 1 차산품 수입으로 구분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수출절차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완제품의 일반수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수입계약 체결

수입자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신용있는 수출자를 물색하여 수입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수출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수입자가 승낙하면 물품매매계약이 성립된다. 수출자가 발행하는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지만, 후일 야기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상세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입승인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Import Restricted Items)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입자동승인품목(Import Automatic Approval Items)이므로 별도의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반대로 수입제한품목에 해당되면 해당 승인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mport License; I/L)를 취득하면 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이며,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의 물가안정, 수급조절, 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년 이내로 단축 또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수입승인을 받은 이후 수량, 가격(단가 포함), 유효기간, 당사자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수입승인한 기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물품매매계약이 정한 바대로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거래은행 소정의 양식인 신용장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L/C)에 물품매매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신용장조건을 기재하고,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서 등을 첨부하여 신용장의 발행을 신청한다.

신용장발생시 주의할 점은 ① 신용장의 발행신청금액이 수입승인서 범위 내이며, 인정된 통화인지의 여부 ②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등이 수입승인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③ 선적기일과 신용장유효기일이 수입승인서 유효기일이내인지의 여부,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용장이 발행되면 발행은행은 발행수수료를 수입자에게 징수하고, 그 발행 사실을 수익자(수출자)에게 전달되도록 수출자 소재지의 통지은행 앞으로 통지한다.

4) 선적서류 도래와 대금지급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자는 신용장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매입의뢰한다.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송부하면, 발행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서류 상호간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발행은행은 수입자에게 대금의 결제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일람불신용장의 경우 수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신용도가 높거나, 수입자의 담보 제공에 의하여 대금결제 없이도 선적서류를 미리 대여해 주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처분한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수입화물대도(貸渡: Trust Receipt: T/R)"라고 한다.

한편 수입물품은 도착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의 도착지연으로 물품의 인수지연이 발생한경우, 수입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행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의 연대서명을 받아 선박회사에게 제공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물품을 인도해 줌으로써 선박회사가 입을 수 있는 책임을 수입자 또는 발행은행이 보상하겠다는 취지이다.

5) 화물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수입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입수한다. 그리고 수입자는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령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통관절차를 준비한다.

그러나 곡물이나 광석과 같은 중량화물은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적재한 채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선상통관이라고 한다.

6) 수입통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자의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로 시작된다. 수입신고는 수출신고와 달리 관세사를 채용한 화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및 통관법인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는 시기에 따라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등 4가지가 있다.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서류심사와 필요하다면 물품검사를 행한 후,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검사의 경우, 한정된 세관인원으로 수입물품을 전량 검사하는 것은 검사에 따른 통관지연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검사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화주, 물품, 선적국, 원산지, 공급자 등에 대한 우범성을 추적 •분석하여 우범성이 높은 화물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통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바, 이를 "수입화물선별검사시스템(Cargo Selectivity: C/S)" 이라 한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가격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 즉 CIF 가격이 된다. 따라서 CIF 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송장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지만,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인 경우에는 운임 및/또는 보험료를 가산하여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가 납부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ssion)이 발급된다.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입물품은 내국물품이 되었으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후 최종목적지로 운송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된다.

※ 수입관세의 납세의무자

수입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상업서류(상업송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등이 화주가 되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